

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촉구안

발의년월일 : 1993. 6. 23

발 의 자 : 김영수 의원의 5인

1.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“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”라고 되어 있어 구 의회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음.
- 짧은 의정사와 의원의 부족한 지식을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직원에게 의존해야 하는 형편일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의원들이 행정부 직원이라는 불신감이 팽배
- 사무과 직원 또한 임명권자의 눈치나 살피고 동료들간의 유대 악화 우려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보조를 하고 있음.

2. 주요 골자

-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을 “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”를
- “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”라고 하는 개정안을 구청장이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임.